

역구매론 약정서(구매기업용) (5-06-0560) 개정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1조(목적) ~ 제 14조(정보제공의 동의) <생략></p> <p>제 15 조(약정의 체결 및 변경)</p> <p>① 역구매론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,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②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③ 본 약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본 약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은행, 판매기업 및 구매기업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④ <u>필요한 경우 은행과 판매기업은 협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역구매론 약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내용은 구매기업의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시행하는 것에 동의하고 승인하며, 은행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.</u></p> <p>제 16 조(면책) ~ 제 19 조(기타 특약사항) <생략></p>	<p>제1조(목적) ~ 제 14조(정보제공의 동의) <좌동></p> <p>제 15 조(약정의 체결 및 변경)</p> <p>① 역구매론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,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②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③ 본 약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본 약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은행, 판매기업 및 구매기업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삭제></p> <p>제 16조(면책) ~ 제 19조(기타 특약사항) <좌동></p>	<p>내용삭제</p>